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원고측에 보상을 절반으로 낮춰 지급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H씨는 2004년 10월 추계체육행사 점심식사에서 주민들이 들리는 술을 얻어 마신 후 음료를 나르던 중 발을 헛디뎠다. 2.5m 높이의 식당 평상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H씨의 유족이 낸 유족 보상금 신청에 대해 H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지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음주했거나 안전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보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Q 공무원 음주사고라도 신재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면사무소 행사에 참가한 지역주민과 점심식사를 하다 추락사한 면사무소 직원 H씨의 유족이 '술을 마신 후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절반이나 삭감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씨가 술을 마신 것은 사고와 무관치 않고 평상위를 걸을 때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보통 행사회식 중 음주는 어느 정도 용인되는데다 평상 주변이 위험하다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H씨가 공무원으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본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준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한 바 있고(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집행인낙의 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대리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는 물론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여부나 믿은 만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부질없게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71758 판결).

따라서 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계약이 무효임을 다투어야 할 것인데,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되고 있어도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정지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Q 甲은 본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출처가 Z로부터 빌린 7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본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Z는 위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TV, 냉장고 등 실품도구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Z가 위 공증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A 귀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출친 甲이 Z에 대한 자기 채무에 대하여 귀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집행인낙의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에

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유효하게 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誤信)한 경우에는 그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표현대리(表見代理)'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한·방·상·식

의정부 수 한방병원 병원장 /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셀러리맨들의 요통이나 경통은 대개 이러한 자세 불량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요통이나 경통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방치하다 증상이 심해져 거동조차 하기 힘들 때야 비로소 병원을 찾는 것이 상례다.

문제는 자세 불량에서 오는 단순 요통을 방치할 경우 만성 요통으로 발전하기 쉽다는 데 있다. 즉 급성 요추염좌가 만성 요추염좌로 발전하는 것이다.

요추 염좌란 허리를 뻐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오랫동안 자세가 불량하면 인대를 비정상적으로 수축, 이완시켜 무기력하게 만든다. 따라서 작은 자극에도 염좌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 의정부수한방병원(031-820-7200) www.ijhanbang.co.kr

직장인의 요통과 자세 ①

직장인을 중에는 오후 늦게만 되면 목뿔이 빠르고 등이 아예, 영치 등이 쑤시고 아프거나 심지어는 다리까지 당기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아침저녁으로 만원 버스,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밀리고 치어느라 여간 고생이 아니라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다리가 휘청거리고 어지럽기까지 하다. 미처 숨 돌릴 틈도 없이 책상 앞에 수북하

게 쌓여진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상사의 눈치보며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엉덩이는 의자에 걸려져 있거나 조금 편해 보려고 다리까지 꼬고 앉게 된다. 업무 전후라도 할라치면 전화기를 어깨에 걸고 두 손은 연신 바쁘다.

점심을 먹고 나면 몸은 점점 나른해지고, 이에 히프를 앞으로 쭉 뻗 자세로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일을 하기 일쑤이다. 여기에 하루종일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보던지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를 봐야 하는 직장인들... 그러다 보니 허리나 목이 안 아플 수 없다.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부진, 불면 등이 나타납니다. 갱년기 장애로 일어나는 증상은 선천적인 소질과 체질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하나 가장 일반적이고 두드러진 증상 중의 하나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갱년기 여성의 약 85%가 경험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혈관의 이완 때문에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흐르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치밀어 오르는 상열감으로 답답해져 겨울에도 방분을 열어놓거나 한복중에도 이불을 덮지 못하고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나 초조감으로 공연히 우울해지고 화를 잘 낸다든가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소화불량, 구역감, 변비, 설사, 식욕부진과 함께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쉽게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커서 독립하고, 남편은 바깥일에 정신을 쏟는 때여서 여성이 느끼는 심리적 허탈감을 악화시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운동,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합시다.

☎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Q 전 40대 중반으로 요즘 생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26~27일 주기였는데 지금은 40~50일이 되어야 합니다. 폐경기가 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폐경기의 증상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A 여성은 사춘기를 지나 생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개의 난소에서 매달 1개의 난자를 번갈아 자궁으로 배출합니다. 이 과정을 배란이라 부릅니다. 가임 연령대 여성들은 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그에 따라 월경도 보통 28일 주기로 하루나 이틀 이상의 편차없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난자와 관련해서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경이 계속 규칙적이었

다가 갑자기 불규칙해지는 형태의 배란 장애가 나타나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시기의 배란장애는 40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폐경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가 없거나 주기가 늦어진다 폐경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저체중 상태에 빠지거나, 식이요법으로 갑자기 체중을 줄이거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때와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체중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생활습관을 고치거나 정서적 안정을 취하면 배란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폐경기(갱년기)란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므로써 오는 자율신경실조증인데 얼굴로 열이 뜨는 상열감, 두통, 두통, 요통, 현기증, 가슴의 울렁거림, 식욕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신경외과장 **배준석**



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의자는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어야 하며 등받이의 모양은 가능한 척추의 모양에 맞아야 합니다. 또 시트는 너무 푹신하지 않아야 하며 의자의 높이는 자신의 다리의 길이에 맞아야 합니다. 좋은 자세로 잠을 자면 피곤한 허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낮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침상은 신체의 중앙이 너무 아래로 처질 정도로 푹신하여서는 안되며 체중이 고루고루 퍼져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심하게 눌리지 않도록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매트나 요 위에 서 다리 밑을 약간 괴여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똑바로 천정을 바라보고 눕거나, 옆으로 누울 때도 다리를 약간 구부려서 눕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들어올리다가 요추부 염좌가 가장 많이 생기므로 요통이 없는 사람에게도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주의할 해야 합니다.

☎ 포천병원 (031-539-9114)

요통의 예방 ①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치료하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요통의 대부분 경우에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에 이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허리에 대해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요통은 요추에 역학적으로 과도한 힘이 내외적으로 가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가능한 허리 부분에 긴장을 주지 않고 생활하는 습관을 익히며, 항상 갑작스러운 행동은 삼가 해야 합니다.

요통의 예방,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자세, 복근과 허리주위 근육강화 운동방법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통이 있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요통을 악화시키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서는 자세는 머리를 바로 세우고 턱은 안으로 당기고 가슴을 펴고 복부 근육에 힘을 주고 허리를 평평하고 골반이 기울지 않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근무나 운전 등으로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바르게 앉는 것은 바르게 서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방에서 의자없이 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세는 허리에 심한 무리를 줍니다. 바르게 앉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를 제시하는 것이며, 거래 당사자간의 대금결제 분쟁시 증명할 방법에 이보다 더 이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4. 각종 세금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킵시다.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만이라도 기한 내에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 및 10~20%에 달하는 가산세 추가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정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국세청에서 고시된 표준율에 의하여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전업농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영농자재 구입 및 품앗 등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8년 자경 감면신청시 입찰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세금을 아끼기 위해 지켜야 할 절대 원칙

세금을 아끼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이 바로 재테크입니다.

1.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깁시다.
세금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고 난 실소득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지출증빙이 없으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남으로 그만큼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세금계

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5만원 미만) 뿐입니다.

2.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세금을 줄일려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았다가 가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을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국세청의 범죄조사를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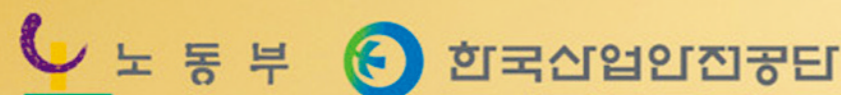
3. 거래대금 지급은 되도록이면 금융기관을 이용합시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가공거래 여부 조사시 실질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거래자료

안전은 생명입니다!

- 교통사고 보다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

이제는 줄여야 합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4,700만 국민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563명이었고, 산업현장의 1,105만 근로자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493명이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발생비율이 교통사고보다 약 2배나 높은것입니다. 산업현장의 사망재해는 노사의 안전실천과 우리사회의 관심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700만 인구 중 6,563명 사망

1,105만 근로자 중 2,493명 사망

안전한 산업현장, 건강한 대한민국!